

FY2018 한공회 감사보고서 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감리조사위원회
한진희 감리2본부장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 평가

*IMD : 63개국 중 41('12) -> 58 -> 59 -> 60 -> 61 -> 63('17)

*WEF: 137개국 중 75('12) -> 91 -> 84 -> 72 -> 62 -> 63('17)

어느 경영인의 고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우리나라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기업을 할 수 없다"
- ② "모든 기업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
- ③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기아사태
- 대우사태
- SK글로벌
- 저축은행 사태
- 모뉴엘
- 대우조선해양
-
-
-
- ?

감사인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관련 외감법규 정비

- 감사품질 = f(적발능력, 보고능력)
- 적발능력(전문성, 노력) 향상
 - =>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등
 -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
 - 전문성(적격성)과 노력(절차와 시간)으로 결정
- 보고능력(독립성)=>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 감사결과 발견된 부정이나 오류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능력
 - 감사인의 독립성에 의해 결정

회사의 회계품질 제고: 내부감사 책임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감독당국 감리조직 강화, 재제조치 강화 등(회사 회계분식금액의 20%이내 과징금 부과, 관련 직원 회사 과징금의 10%이내 부과, 감사보수 5배수 이내 과징금 부과 등) 고려시 보다 더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와 충실한 감사절차 수행이 요구됨

회계기준 위반 지적 유형

① 부정한 재무보고

② 자산의 횡령

③ 회계처리 오류

회계부정위험 요소

- ✓ 횡령·배임혐의 발생
- ✓ 잦은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 변경
- ✓ 잦은 사업목적 변경
- ✓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또는 운영보고서 미제출
- ✓ 잦은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부과
- ✓ 우회상장 회사
- ✓ 타법인 주식투자, 대여금 등 유의적 투자
- ✓ 흑자 반전 등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몇 개의 숨은 그림을 찾으셨나요?



숨은 그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대부분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은 그림과
비슷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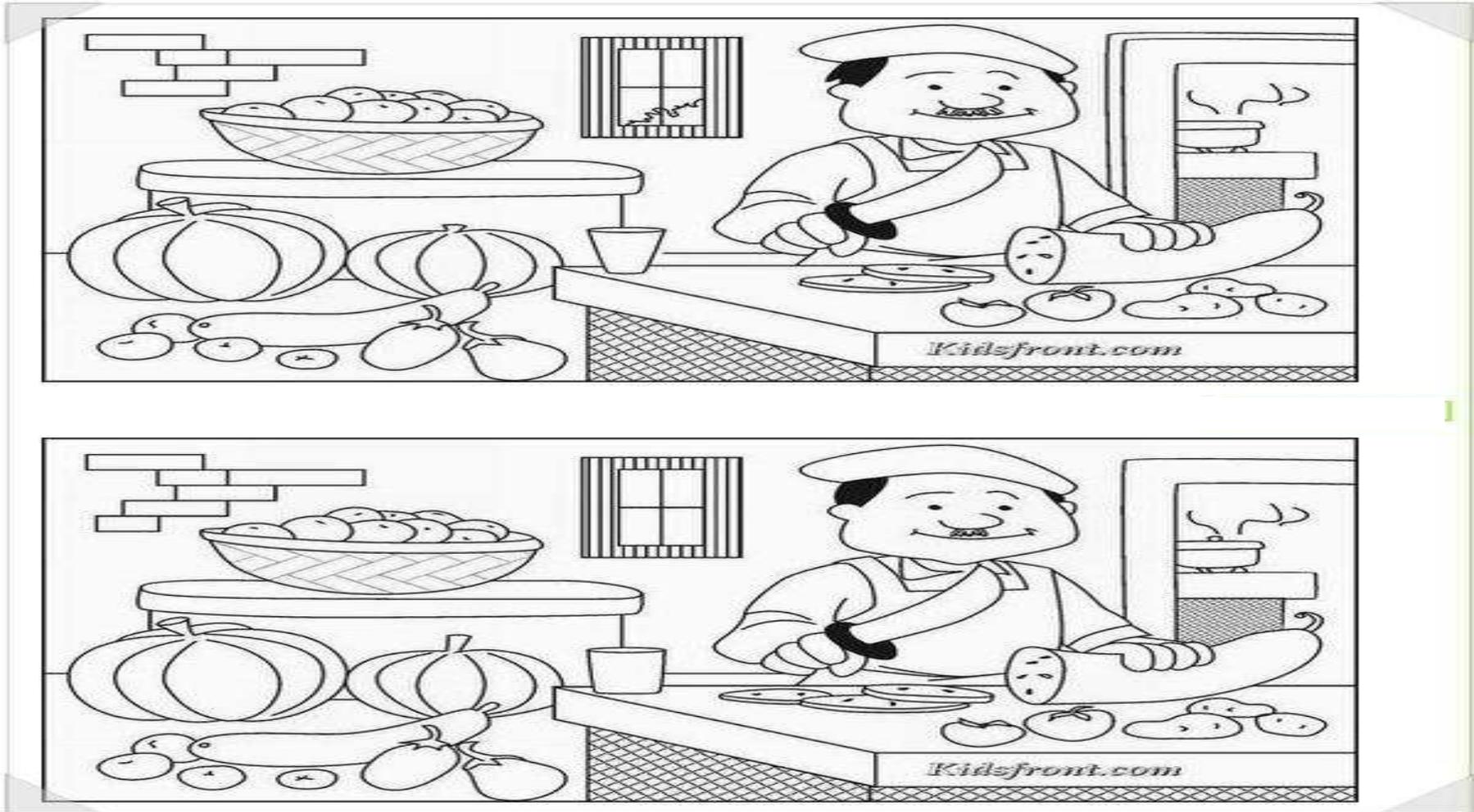
회계감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은

-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고,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

아래 두 그림 간에 틀린 그림을 찾아 보세요.



- 틀린 그림을 잘 찾는 기법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해당 재무보고체계(회계기준)를 명확하게 알고 숙지한 사람만이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음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감사기준서 200 문단14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되는 윤리적 요구사항, 문단 15 전문가적 의구심, 문단16 전문가적 판단으로 되어 있음
- 상기 3개의 요구사항을 생각하면서 위 그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습이 보입니까?
 - ❖ 감사인이 회사 관점에서 보는 것과 투자자 관점, 감독기관의 관점 등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본다면 회사의 의도(고의, 과실 등)가 보이지 않을까요?

목 차

1.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A유형)
2. 자산·부채, 수익·비용, 영업현금흐름 과대/소 계상(B유형)
3. 특수관계자거래, 우발부채 관련 사항 등 주석미기재(C유형)
4. 법규 위반사항
5. 기타 유의사항

1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A유형)

1. 매출 관련 지적사항

① 재화와 관련된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점에 대한 판단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상품(중고 건설중장비) 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대금이 전액 회수되고 관련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는 등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음에도, 차기연도의 일자로 작성한 '인수증'을 기준으로 수익을 이연함으로써 당기와 전기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건설중장비의 경우 소유권 이전시점에 관할 행정관청에 취·등록세 납부 및 등록서류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 감사인은 동 건설중장비의 소유권이전 절차의 완료 여부, 판매대금의 회수여부, 인수증의 작성 배경이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소유권 이전일자나 대금회수 일자와 달리 인수증의 일자가 차기연도로 작성된 경우 인수증 작성 배경이나 사용 용도, 거래상대방의 동 거래 인식시기, 거래의 경제적 실질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② 로열티수익 등의 기간귀속 오류

[회사 지적사항]

- 로열티계약 초년도에는 매년 12월에 발생하는 로열티수익과 지급수수료에 대한 정산서를 재무제표 확정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였고, 최근에는 회사가 동 로열티 계약 구조, 정산서 수령시기 등을 변경하여 재무제표 확정일 또는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동 정산서를 수령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계약초년도와 달리 최근에는 계약변경 및 정산서 수령 시기가 단축되어 12월 로열티 수익의 신뢰성있는 측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수익인식 요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로열티수익과 지급수수료를 각각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계약이 변경되고 정산서 수령시기가 단축되었음에도 수익인식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회사의 수익인식 등 중요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담당이사나 계정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전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변경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유의하여야 하며, 또한 보고기간말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공시를 하여야하는 사건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매출채권 실재성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공공기관에게 제공한 컨설팅 용역 수수료(매출채권)를 회수 하였음에도 이를 허위로 계상하여 동액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거래처의 대부분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므로 가공매출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동 거래처의 특성상 채권조회서 회신이 저조할 것으로 예단하여 외부조회절차를 생략하고 세금계산서 및 기말 이후 입금내역 확인 등 대체적 절차만을 수행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감사절차 수립시 내부통제제도가 미비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확인이나 결산일 이후 입금내역 확인 등의 대체적 절차로는 매출채권 잔액의 실재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어려우므로 채권채무조회절차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실시할 필요 있음

3.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① 거래처가 폐업을 하거나 장기간 회수실적이 없는 매출채권과 ② 폐업 거래처 보유부동산의 경매처분 등 손상사건이 발생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매출채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으며, 장기 매출채권(선급금)의 잔액 변동이 없는 상황임에도 회수가능가액과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매출채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으며, 장기 매출채권(선급금)의 잔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의 신용정보 및 국세청 휴·폐업조회 (<https://www.hometax.go.kr/>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등을 통한 거래처의 영업유무와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채무자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 등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단기대여금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단기대여금 관련 약정서에 대한 검토, 대여금 발생 경위와 채무자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채무자의 재무구조가 열악(자본잠식 및 대규모 사업손실)한 경우 추가적으로 보고기간종료일 후 사건(폐업)에 대한 검토절차 등을 통하여 정상채권 여부 및 동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5. 재고자산평가손실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정상영업주기내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정상재고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 재고의 시가를 잘못 적용하는 등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회사가 제시한 자료 검토시 정상재고 분류의 적정성 여부, 저가법 평가시 적용한 순공정가치의 적정성 여부 등이 매년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피투자회사 지분(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 손상차손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손상평가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 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회사가 매도가능증권 등의 자산을 평가할 때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태를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면 손상차손 인식여부에 대한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7.영업권 손상차손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제품 판매매장 철수와 매출총손실 발생 등으로 해당사업 관련 영업권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영업권의 손상을 인식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매장철수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영업권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영업권의 경우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회사가 추정한 회수가능액의 적정성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8. 기타의운용리스자산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수수료(홈쇼핑회사에 방송 시간 당 일정액을 지급)를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타의운용리스 자산으로 계상하여 해당 자산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리스개설 증분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담하지 않는 금액임에도 리스개설 증분원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해석 등을 착오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로 규정하고 있고, 증분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금액이므로 운용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급수수료가 증분원가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9. 선급비용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금융리스채권을 자산유동화회사에 양도하면서 동 자산유동화 채권 관련 보증보험료와 법률수수료 등을 양도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이를 금융리스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상각하여 선급비용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선급비용 계정의 양적·질적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선급비용의 실재성 및 계산 적정성 등 일반적인 감사절차만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자산유동화거래가 매각거래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동화대상자산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등도 자산과 함께 매각(이전)되는 것인 바, 유동화채권 관련 보험료와 법률수수료 등이 재무제표에서 모두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10. 이연법인세자산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① 토지재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 회사는 가산할 일시적차이(토지재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여 자기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토지재평가이익))을 과대계상함

②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오류

- 회사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는 전환우선주 관련 금융부채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세무조정결과 발생한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고
 - 회사가 이연법인세 회계를 채택하고 있고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재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계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 또한 전환우선주 관련 금융부채는 회계(부채)와 세법(자본)의 분류상 차이가 발생하나, 배당금 지급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11. 단기차입금과 판매비와관리비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분양판촉비와 지급수수료를 반환조건 없이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비용과 대표이사차입금을 허위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분양판촉비, 지급수수료 등이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계약내용이 통상적인 거래와 상이하여 통장거래내역, 원천징수 납부세액 등에 대한 검토는 실시하였으나 용역제공 계약자에 대한 외부조회 등은 실시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감사인은 비경상적인 계약으로 거래의 실질이 의심될 경우 회사제시자료에 대한 검토 외에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외부증빙 즉, 외부조회 등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12. 로열티비용의 기간귀속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공사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배회사에 로열티비용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진행기준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인식 시점에 동 로열티 비용을 대응하여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객사에게 최종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인식함으로써 로열티비용 기간 귀속 오류가 발생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로열티 계약내용 등의 검토는 실시하였으나 로열티비용을 최종 빌링금액을 기준으로 지배회사에 지급하던 관행과 회사가 수행한 공사 대부분이 단기 공사이고 공사금액 또한 소액인 경우가 많아 로열티비용의 인식시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로열티 지급계약의 거래조건 및 관련 수익인식시점과의 대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로열티비용 인식시점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함

13. 지분법 및 연결 관련 지적사항

① 영업매수차익 기간귀속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의 지분 80%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영업매수차익을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대한 해석 착오로 취득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초도감사를 받은 시점(외부감사대상 회계기간(당기))에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던 시점에는 외감법 감사대상 및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투자주식을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따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외감법 대상이 되는 때 영업매수차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①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경우 지분법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 채택시 직전년도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교 표시되는 직전사업년도 재무제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회사가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연도에는 외감법에 따른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더라도, 감사인은 최초로 외부감사대상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지분법을 적용하고 영업매수차익을 인식)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② 지분법과 연결회계처리시 영업권 산정과 내부거래제거 오류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중국소재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①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i) 해당기업을 합병하면서 추가로 취득한 동 해당기업 투자주식과 이전대가(교부주식)를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가액과 상증세법상 금액으로 각각 잘못 측정하였고, ii)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지 아니하거나, iii) 종속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을 그 원천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지 않는 등 지분법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과 영업권, 자기자본을 각각 과대계상하고 자본항목간 계정재분류 오류를 범하였고,
-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i)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오류사항과 더불어 ii)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을 상계제거하면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포함된 오류금액을 영업권에서 잘못 차감하였고,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잘못 계상하는 등 연결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영업권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하고 자본항목간 계정분류 오류를 범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사업결합 및 지분법,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합병을 통한 지배력 획득의 결과로 피투자회사가 종속기업이 된 경우, 사업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자산과 이전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영업권(또는 잉가매수차익)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동 차이의 원인에 대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여 투자자본계정 상계 및 내부거래와 관련 미실현손익의 제거 등 지분법 및 연결회계처리의 오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③ 종속기업 재무제표 오류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이 매 회계연도의 12월에 발생한 로열티수익과 지급수수료를 차기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잘못 인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회사는 종속기업의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지분법과 연결 회계처리를 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소(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동일 감사인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연결회사의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은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가 연결재무제표에 그대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종속기업 감사팀이 주요계정에 대해 입수한 감사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한지 검토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야 함
또한 위법행위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하고, 지배기업의 감사인과 종속기업의 감사인(및 담당이사)이 동일인일 경우 위반동기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자산·부채, 수익·비용, 영업현금흐름 과대/소 계상(B유형)

1. 유상사급거래 관련 매출과 매출원가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수수료만 매출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수익인식(총액/순액)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숙지 소홀과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매출·매입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처가 있거나 발주처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납품하는 회사의 경우, 동 거래와 관련된 재고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유상사급 관련 매출총액 인식 오류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한공 회가 동 지적사항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17.12.29.)한 이후부터는 회사와 감사인을 보다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특수관계자 거래, 우발부채 관련 사항 등 주석미기재(C유형)

1.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기중거래 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과소기재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관련 규정 숙지 미흡, 특수관계자 거래의 완전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감사인은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현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부 등을 이사회 의사록, 지분구조, 거래처 보조원장 등의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기중거래금액, 관련 채권·채무의 기초·기말잔액 등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세부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함

2. 특수관계자 거래(지급보증) 주식 공시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 타인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주식 기재하지 않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감사는 회사의 보증제공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일보가 아닌 월보)와 금융기관조회서상 지급보증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지급보증액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회 의사록과 보증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대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을 완전성 확인을 위해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아 검토하여야 함

3. 담보제공자산 주식 공시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금융기관에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주석이 기재하면서 담보설정가액을 주식에 기재하지 않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은행조회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검토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 유형자산 담보제공 사실이 주식에 기재된 것은 확인하였으나 담보설정액이 누락된 사실을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 감사인은 자산의 담보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금융기관조회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주식에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장부가액, 담보설정액(채권최고액) 등)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참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공시 위반시 중조치 유의

- 최근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특수관계자거래 주식 미공시나 일부 공시누락, 과소공시 등으로 중조치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동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수관계자 주식공시 모범 사례('13.11.8.) 및 최근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공시 위반시 감리결과 중조치 사례 등 안내('18.7.2.)를 참고하여 감사보고서 주식기재사항의 완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주식 공시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자진하여 수정 공시하는 것 필요

(* 개정양정기준-> 감리착수후 수정공시시 1단계 감경제도 삭제예정)

<감사품질 제고 방안 예시 참고사항 >

- ①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숙지·교육 강화)**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기업회계기준(일반회계기준 제25장과 K-IFRS 1024 특수관계자 공시)과 감사기준서(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에 대한 숙지와 교육 강화
- ② **(감사보고서 발행전_사전점검 강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공시사항에 대한 이중 검토(품질 관리시스템 보완) :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공시내용과 동 계정조서와의 상호대사절차를 강화하고 특수관계자거래를 중점 심리항목에 포함(담당이사, 심리담당자가 이중으로 점검 필요)
- ③ **(조서취합 완료전_특수관계자거래 공시사항 (담당이사차원)모니터링점검 강화)** 거래 상대방인 특수관계회사의 공시내용과 회사의 공시내용과의 일치 여부 확인(전기 및 당기 감사보고서 공시내용 상호 대사 필요)
- ④ **(담당이사별로 발행된 감사보고서의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사항 (감사인차원)모니터링점검 강화)** 담당이사별로 감사보고서를 샘플 선정하여 특수관계자거래 주식공시내용이 특수관계자 주식공시 모범 사례에 부합한 양식*인지를 점검

4 법규 위반사항

1.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위반 지적사항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코스닥상장법인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후에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감사할 수 없음에도 동 기간에 감사업무를 담당하게 함

[유의사항]

-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독립성 위반(연속감사 위반 등 법규 위반)은 원칙적으로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조치하고 있는 바, 감사인은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법규의 숙지 및 법규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통제절차를 적절하게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함

(참고)외부감사 수행시 이해상충 관련 유의사항 안내(금융감독원 10월4일 보도자료)

① 종속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제공

-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당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비감사용역을 수행

(사례1) 종속회사 비감사용역 수행 중 모회사 외부감사계약 체결

- A회계법인은 x1.3월부터 B회사의 종속회사인 C회사의 재무관리기준 구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데이트 용역을 수행하던 중, 동년 6월 모회사인 B와 당해연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
 - ◇ '18.5.1. 이후에는 독립성 적용대상 회사 범위가 연결대상 지배·종속관계로 확대되었으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

(사례2) 모회사와 증명업무 계약체결 후 종속회사 비감사용역 제공

- A회계법인은 x1년 8월 B회사(지배회사)의 해외 시장 상장을 위한 증명업무(Comfort Letter 작성)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2년 5월 B회사가 상장계획을 보류함에 따라 계약서상 결과물(Comfort Letter)이 산출되지는 않음
 - 한편, A회계법인은 x2년 1월~4월중 C회사(B회사의 종속회사)와 자산 매도를 위한 실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
 - ◇ 독립성 판단은 감사뿐만 아니라 증명업무도 포함되며, 회사 범위도 연결대상 지배·종속관계로 확대되었으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
- * 法上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일정한 용역 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결과물 산출 여부는 관계없음

②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컨설팅법인)을 통한 비감사용역 제공

-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그 기간 중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인 컨설팅법인이 해당회사에 금지된 비감사용역을 제공

(사례) 컨설팅법인을 통한 비감사용역 제공

A회계법인은 별도의 컨설팅법인*(B)을 설립하고, 동 컨설팅법인(B)은 법상 A회계법인이 제공할 수 없는 비감사용역업무를 수행

- A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컨설팅법인(B)에 대한 100% 지분을 소유
- 또한, 컨설팅 용역에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한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참여
- ⇒ 외관상으로는 B컨설팅법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인 A회계법인이 금지된 비감사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

※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시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인 컨설팅법인이 제공한 비감사용역 현황을 중점 점검할 예정임

③ SPC 외부감사 수입 후 재무제표 대리작성 용역 제공

□ 회계법인이 SPC의 기장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외부감사를 수행*

- SPC(Special Purpose Company)의 경우 회계처리가 단순하고 이해관계자가 적어 외부감사와 기장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례가 있었음

- (사례) SPC 기장 및 외부감사 동시수행

A회계법인은 상법상의 유동화회사인 SPC와 포괄적인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감사업무는 회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기장 등 재무제표 작성업무는 외부의 세무 회계사무소에 의뢰

- ⇒ 회계법인이 포괄적인 업무수탁계약 수입 후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통제 및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

④ 감사대상회사 주식 보유 점검 소홀

□ 회계법인이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 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

(사례) 주식 보유현황 점검 소홀

A회계법인은 회계법인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 점검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주식 보유현황 자진신고 및 표본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퇴직자, 파견자, 휴직자를 점검대상 모집단에서 제외

- ⇒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퇴직자(또는 퇴직 예정자), 파견자, 휴직자를 포함하여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할 필요

⑤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 회계법인이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

*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유착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이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법인은 3개 사업연도)까지만 특정회사의 감사업무 수행을 허용(§3④)

(사례) 동일이사 교체 의무 위반

A회계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B사의 x1년~x4년 4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동일한 이사인 甲으로 하여금 수행케 함

다만, B사는 최초 감사계약(x1년 4월) 당시 비상장이었으나 동년 12월 코스닥에 상장

⇒ 최초 감사계약 당시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기중 상장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상장 1년차로 보아 연속감사는 3개 사업연도까지만 가능하므로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

<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법규개정 내용>



공인회계사법 개정 ('16.9.30 시행)

- 직무제한 범위 추가
 1.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2.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3.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공인회계사법 개정 ('18.5.1 시행)

- 직무제한 범위 추가
 1. 회사의 자산 등 매수목적 가치평가업무
 2. 자금의 조달·투자알선 및 중개업무
 3. 경영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 독립성 적용 대상회사 확대
독립성 유지 대상 회사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확대

(참고)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금융위 '18.9.19 보도자료)

< 약품유형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 >

유형	자산화 가능 단계	설정근거
신약	임상 3상 개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전성, 약효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임상 3상 개시 승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美 제약, 바이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 정부 최종 승인율이 약 50%
바이오 시밀러	임상 1상 개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유사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임상 1상 개시 승인 이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美 연구결과,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최종 승인율 약 60%
제네릭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 오리지널약품과 생체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등한지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화학적 동등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진단 시약	제품 검증 (허가신청, 외부임상신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의 객관적인 제품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5 기타 유의사항

1. 외감규정 동기판단 중과실 기준 규정 반영

“고의사유”와 “중과실 사유”를 금융위 규정에 반영

-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감사품질관리 관련 조치 강화

조 항	요 약
§9조의2 감사인 등록	등록요건으로 감사품질 확보 를 위한 물적설비 및 심리체계, 보상체계 및 업무방법 구비 필요
§17 품질관리기준 제정	품질관리절차,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 을 위한 사항을 제정
§25 수시보고서	상장법인 감사인 은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
§26 품질관리수준 평가	증선위는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
§29⑤ 개선권고 이행점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를 점검
§29⑥ 개선권고 외부공개	<u>개선권고 사항의 외부 공개 및 개선권고 미이행시 미이행사실을 외부에 공개</u>
[별표2] 대표이사 등 조치	<u>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 발생시 조치</u>
[별표 1] & [별표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조치 강화	<u>회계기준 위반 없더라도 감사절차 소홀시 조치 예정(양정기준 개정 중)</u>

감사합니다